

의안번호	제 543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353 회)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7. 1. 6.

#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43
----------	-----

제출연월일: 2017. 1. 6.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이유

-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고,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것으로 동일한 용어(공익신고)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며,
- 나.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내부신고자의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본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신고 대상에 학교법인 관계자 포함(안 제2조)
- 다.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안 제5조제1항)
- 라.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책임관(감서부서의 장) 지정(안 제5조의2)
- 마. 신고와 관련하여 조력한 자에게 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규정 준용(안 제7조제4항)
- 바.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사.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절차 및 불이익 처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 등 규정 신설(안 제8조)
- 아. 보상심의위원의 제척 사유 및 기피·회피에 대한 신청 절차 등 규정 보완(안 제12조)
- 자. 보상심의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비밀누설 및 품의손상 등의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 차. 보상금 신청 절차 개선(안 제14조)
  - 교육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상금 신청 가능
  -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내부신고자인 경우 책임관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입법예고(2016. 11. 4. ~ 2016. 11. 24.): 해당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없음
  - 4)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익신고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사립학교 교직원”을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  
공무직원

제2조제2호 중 “공익신고”란을 “부조리신고”(이하 “신고” 라고 한다.)란” 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익신고 기한)”을 “(신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공익신고”를 “신고”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익신고 방법 등)”을 “(신고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익신고”을 “신고”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감사부서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는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부조리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을 부조리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교육, 신고의 상담 및 접수, 처리,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책임관은 부조리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1항 중 “교육감은 공익신고”을 “책임관은 신고”로 한다.

제7조 제목 “(신고자의 보호)”를 “(신고자의 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감은 신고자의 공익신고”를 “책임관은 신고자와 신고”로, “공익신고”를 “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책임의 감면 등) ① 교육감은 공무원 등이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2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 등이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 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공무원 등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공익신고”를 “부조리신고”로 하고,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 보상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해당 사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이거나 그 직무 등 관련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고자 및 피신고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제12조제1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제12조제2항 전단 중 “신고자는 위원에게 심의의”를 “해당 사안의 신고자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고,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자와 해당위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있다”를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을 따르며, 위원장에 대한 결정

또는 허가는 교육감이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의 제목 “(보상금의 신청)”을 “(보상금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식에 따라”를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인 경우에는 기관 또는 부서 추천에 따라 책임관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제15조제1항 중 “위원회는 공인신고자의 신청에 따라”를 “교육감은 보상금의 지급 신청 또는 추천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금 신청일 또는 추천일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로, “별지 제3호”를 “별지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원회의”를 삭제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외부기관”을 “내부 및 외부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및 지도감독을 받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u>공익신고자</u>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를 말한다.</p> <p>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u>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u></p> <p>나. 「초·중등교육법」 제6조 및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u>사립 학교 교직원</u></p> <p>다. <u>&lt; 신 설 &gt;</u></p> <p>2. "<u>공익신고</u>"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p>	<p><u>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사람 ----- ----- ----- -----</p> <p>제2조(정의) ----- ----- 1. ----- ----- 사람을 ----- 가. ----- ----- 공무원 나. ----- ----- 사립 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p> <p>2. "<u>부조리신고</u>"(이하 "신고" 라고 한다.)란</p>



현행	개정안
<p>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u>교육감은</u> <u>공익신고</u>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7조(<u>신고자의 보호</u>) ① <u>교육감은</u> <u>신고자의 공익신고</u>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u>공익신고</u>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u>교육감은</u> 신고자의 동의 없이</p>	<p><u>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을 부조리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u></p> <p><u>② 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교육, 신고의 상담 및 접수, 처리,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u></p> <p><u>③ 책임관은 부조리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u></p> <p>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u>책임관은</u> <u>신고</u>-----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u>신고자의 보호 등</u>) ① <u>책임관은</u> <u>신고자와 신고</u> ----- ----- <u>신고</u>----- -----</p> <p>② -----</p>

현행	개정안
<p>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과 위원을 징계하거나 <u>해촉</u>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8조(불이익 처분 등의 금지)</p> <p>① (생략)</p> <p>② <u>&lt;신 설&gt;</u></p>	<p>----- ----- 위촉 해제-----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u>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u>제7조의2(책임의 감면 등) ① 교육감은 공무원 등이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u></p> <p><u>② 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u></p> <p>제8조(불이익 처분 등의 금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공무원 등이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 행위를</p>

현행	개정안
<p>③ &lt;신설&gt;</p> <p>④ &lt;신설&gt;</p> <p>② (⑤항으로 변경)</p> <p>제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u>공익신고</u>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p> <p>① ~ ② (생략)</p> <p>③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당연직 위원<del>의 임기는 해당</del></p>	<p><u>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u></p> <p>③ <u>신고자가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 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u></p> <p>④ <u>책임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공무원 등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⑤ (현행 ②항과 같음)</p> <p>제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u>부조리신고</u> ----- ----- <u>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u> <u>심의위원회</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한 차례만</u> ----- -----</p>

현행	개정안
<p>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위원회의 심의</u>에서 제척된다.</p> <p>1. <u>위원이 해당 신고내용의 당사자인 경우</u></p> <p>2. <u>위원이 해당 신고내용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u></p> <p>3. &lt;신 설&gt;</p> <p>4. &lt;신 설&gt;</p> <p>② <u>신고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u></p> <p>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p>	<p>-----</p> <p>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① ----- ----- <u>해당 사안</u> ----- -----</p> <p>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이거나 그 직무 등 관련자인 경우</u></p> <p>2. <u>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고자 및 피신고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u></p> <p>3. <u>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u></p> <p>4. <u>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u></p> <p>② <u>해당 사안의 신고자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에게-----</u> ----- ----- <u>이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고,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자와 해당위원에 통보하여야 한다.</u></p> <p>③ -----</p>

현행	개정안
<p>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p> <p>④ &lt;신설&gt;</p> <p>&lt;신설&gt;</p> <p>제14조(보상금의 신청) 신고자는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p>	<p>----- -----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④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을 따르며, 위원장에 대한 결정 또는 허가는 교육감이 한다.</p> <p>제12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li> <li>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li> <li>3. 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ol> <p>제14조(보상금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u>② &lt;신 설&gt;</u></p> <p><u>③ &lt;신 설&gt;</u></p> <p>제15조(보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p> <p>① 위원회는 공인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u>별지 제3호 서식</u>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p>	<p><u>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렴도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인 경우에는 기관 또는 부서 추천에 따라 책임관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u></p> <p><u>③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u></li> <li><u>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u></li> <li><u>3.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u></li> </ol> <p>제15조(보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p> <p>① <u>교육감은 보상금의 지급 신청 또는 추천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금 신청일 또는 추천일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u> ----- ----- ----- ----- <u>별지 제4호</u> -----</p>

현행	개정안
<p>② 보상금은 <u>위원회의</u> 지급 결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16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공익신고에</u>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 2. (생략)</p> <p>3. <u>외부기관에서</u> 수사·조사·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p> <p>4. ~ 5. (생략)</p>	<p>-----</p> <p>② ----- <u>위원회의</u> ----- -----</p> <p>---</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p> <p>-----</p> <p><u>신고</u>-----</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내부 및 외부기관에서</u> ----- -----</p> <p>4. ~ 5. (현행과 같음)</p>

## 신 고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①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업(직위)
	주소	
	전화번호	예금계좌번호
② 신고 대상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③ 신고내용 (6하 원칙에 의거 기재)		
④ 증거서류	“증거 목록을 적고 증거서류는 별도 제출 가능”	
⑤ 비 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업(직위)	
	주소		
	전화번호		
② 대리인 또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의 ( )	
	주소		
	거주지 (우편물 수령지)		
③ 부조리신고 조사결과	접수번호		
	통지일자		
	통지내용		
④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⑤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⑥ 보상금 신청금액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 및 대리인·대표자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보상금 결정 통지서

① 보상금 접수번호	
② 보상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소
③ 지급결정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지급액    금                    원(금                    원)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감

## 관계법령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45호, 2016.3.29., 일부개정]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 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95호, 2016.1.25, 전부개정]

**제33조(보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에 따라 보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보상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보상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보상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보상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보상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보상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상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위원장은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에게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사실과 기피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보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상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보상위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